

함께하는 고봉분담 함께웃는 밝은내일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 02 ) 731-6391/4 / 전송 731-6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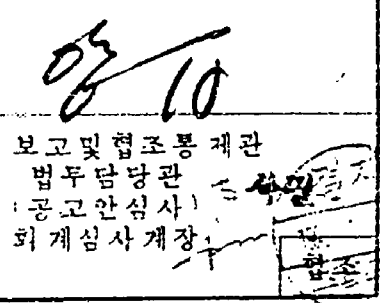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개 58531-2520

시행일자 1994. 10. 26

(경유)

수신 (제 1 안)

참조 내부결재

취급		시	장
보존			
주택국장	전결		
주택개량과장			
개량 1 계장			
기안	이 인 재		

제목 도시계획(주택개량재개발)입안 및 주민의견청취

1. 우리시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일대에 대하여 관악구청장으로 부터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지정 요청이 있어 별첨 내용과같이 검토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2.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주민의 의견청취)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내용을 일반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내용

o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봉 천 9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일대	21,524.9	신규 지정

나. 주민의견청취

1) 공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관악구 주택과

3)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별첨)

4)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지 게재(2종의 일간지에 조건, 석간 또는 1일 이상 시차를 두어 게재)

**공공공공공공**

5) 소요예산

o 예산액 : 1,617,000원

o 산출근거 : 3단 × 7cm × 35,000 × 2개지 × 1.1(부가세) = 1,617,000원

o 예산과목 o 봉천9 주택개량제개발구역

(주택개량제개발특별회계) 제개발사업, 사무비, 사무관리,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 808,500원

o 신당4동1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비, 사무관리,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 808,500원

o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언론회관 청구에 의거 직불

- 첨부 1. 공고안 1부  
 2. 도시계획입안 도서 및 시의회 부의안건 각 1부  
 3. 신청내용 검토조서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2담당관

제목 도시계획안(주택개량제개발구역) 신문공고 의뢰

1. 별첨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2) 공람장소 : 관악구 주택과
- 3)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별첨)
- 4)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지 게재(2종의 일간지에 조건, 석간 또는 1일이상 시차를 두어 게재)

**원본대조필**

5) 소요예산

o 예산액 : 1,617,000원

o 산출근거 : 3단 × 7cm × 35,000 × 2개지 × 1.1(부가세) = 1,617,000원

o 예산과목 o 봉천9 주택개량제개발구역

(주택개량제개발특별회계) 제개발사업, 사무비, 사무관리,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 808,500원

○ 신당4동1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비.

사무관리,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 808,500원

○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언론진흥청 청구에 의거 직불

첨부 1. 공고안 1부

## 주 택 개 량 과 장

(제 3 안)

수신 관악구청장, ~~금구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따른지시

1. 귀구 봉천2동 457번지일대를 주택개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도시계획안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키고자 공고 하였음을 통보하니 도시계획 확인원에 도시계획 입안지로 표기(구역지정 고시 또는 취소일까지)하여 증명을 발급하고

2. 관계서류 사본을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지정된 장소(주택과)에서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공고문 사본을 구청 및 관할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토록하여 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후, 제출된 주민의견 및 귀구 검토의견을 공람종료후 5일 이내 보고하기 바람.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안 입안 도시 1부, 끝.

## 서울 특별 시장

(제 4 안)

수신 기획담당관

제목 시의회 의견청취 의뢰

원본대조 

1. 우리시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일대를 주택개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시의회 부의안건 및 도면 각3부, 끝.

## 주 택 개 량 과 장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도시계획입안 및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협의

및 근거인상등 330번지 일대론 주택개발계획개발구역으로 지정하<sup>는</sup>안  
개정안

1. 우리시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 일대를 주택개발계획개발구역으로 지정하<sup>는</sup>안  
주민의견청취를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결론과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으니 주택개발계획개발구역지정 입안내용을 검토후 귀과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입안 도서 1부. 끝.

#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 도시계획과, 공원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원본대조필

일시	1994. 10. 14	제 308 호
발행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제	114	114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4 - 31 호

도시계획공람공고

1. 봉천9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과 신당4동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4년 10월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1994. 10. . ~ 1994. 11. . (14일간)

나. 공람내용

(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도시계획안	구역명	위치	면적(㎡)	공람의견서 제출장소
주택개량재개발 구역 신규지정	봉천 9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일대	21,524.9	관악구 주택과

(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시계획안	지구명	위치	면적(㎡)	공람의견서 제출장소
주거환경개선 지구 신규지정	신당4동1	중구 신당동 330번지일대	2,905	중구 주택과

다. 관계도서 : 중구 주택과와 관악구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주택시량재개발용지 9



일본계 주택

주거환경개선지구  
117

